

협력업체를 통한 손쉬운 FTA 활용

1. 기업 및 제품소개

- G사는 섬유제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Polyester Staple Fiber를 구입하여 아프리카, 미국 등지로 수출하는 도매업체임
-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도매업만을 영위

2. FTA 활용전 상황

- 폴리에스터 화이버의 경우 국내 섬유산업 환경상 한-EU FTA 원산지 결정기준* 충족이 용이함에도 원산지 관리능력 및 시스템 부재로 활용 저조
* SP: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
- FTA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원산지확인서 등 증명자료 구비가 어려워 FTA 활용이 어려움

3. 극복 방법

- 한-EU FTA 활용을 위해 발효 이후 세관 설명회 참석
 - 인증수출자 제도 이해 및 FTA 활용방법 제고를 통해 두려움 해소
- 완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의 협조를 통해 인증수출자 지정('11.8.1)
 - 컨설팅으로 완제품 생산업체 원산지결정기준(SP) 충족 확인 및 원산지확인서 등 필요서류 구비를 통해 인증수출자 지정
- 한-EU FTA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-미 FTA 발효 즉시 활용
 - 한-EU FTA 원산지기준 충족하는 경우 한-미 FTA 협정도 충족

- EU 인증담당자와 바로 연락하여 한-미 FTA 발효 즉시 원산지 증명서 발행방법 등 상담을 받고 즉시 활용

품명	HS	협정	원산지 결정기준	관세율 → 협정세율
Polyester Staple Fiber	5503.20	한-EU	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	4% ▶ 0%
		한-미	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 (품목번호 5201부터 5203까지, 5401부터 5402까지, 5403.20, 5403.33부터 5403.39 및 5403.42부터 5405까지의 것은 제외한다)로부터 생산된 것	4.3% ▶ 0%

- ▶ 화학재료(Polyester Resin)로부터 제품이 생산되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

4. 활용 효과

- 한-미 FTA 발효 100일간 전년 동기 대비 대미 수출액 100% 증가
 - 미국 수출물량이 증가추세로 단일의 수입자와 거래를 해왔으나, 한-미 FTA 발효 후 새로운 바이어 확보를 통한 향후 대미 수출확대 예상
- 한-EU FTA 발효 후 새로운 거래선을 확보하여 원산지 인증품목을 수출함으로써 FTA활용을 통한 수출 증대

5. 시사점

- 수출자, 완제품 공급자 등의 관련기업간에 FTA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서류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여 FTA 활용효과를 극대화 필요

구분	상세내역
업종(품목)	인조섬유,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(HS 제5503.20호)
적용협정	한-EU FTA
추천업체	섬유제품 수출업체